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3. 13.(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작은학교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마. 작은학교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바. 작은학교 교직원 배치 및 교직원 우대(안 제7조~안 제8조)
- 사. 작은학교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안 제12조)
- 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 자.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충청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7.6.)을 통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¹⁾에 따른 농·산촌지역의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년 8월에 제1차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대상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에 따라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작은학교 증가를 농·산촌지역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충청북도 전역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 작은학교 수 추이 >

(단위: 교)

구분	2021년	2023년	2025년	2028년	2030년
전체학교 수	482	481	485	488	491
작은학교 수	185 (38.4%)	186 (38.7%)	194 (40.0%)	198 (40.6%)	203 (41.3%)

*출처: 충청북도교육청(학교요람, 학급배정, 중기학생배치계획)

**분교장, 공립 각종학교 포함 / 작은학교: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고

-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제1차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은 「충청북도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 11. (생략)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계획의 근거와 취지 및 지원대상이 명확히 일치하지 않음

- 이에, 조례에 근거한 지원대상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에서 도내 작은학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도내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본 조례는 도내 작은학교 지원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학교를 “작은학교”로 규정함
 - 현행 관련법상 작은학교에 대해 명확한 정의는 없고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현황을 고려하여 작은학교에 대해 각기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음

〈조례상 작은학교 정의 현황〉

조례명	작은학교 정의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 4.,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5. 13.,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7. 6., 제정)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15. 4. 10.,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31.,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2018. 3. 29.,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 (2024. 2. 22., 제정)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제1호 이외의 학교 중 경상북도교육감이 제5조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2.,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단, 특별한 사향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0., 제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

- 현행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에 소재하는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는 2025년 2월 현재 기준 193개교임
-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작은학교의 정의를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한정할 경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1차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2023.8월, 충청북도교육청)’ 에 따른 지원대상인 193개교에 비해 34개교가 감소한 159개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 작은학교를 농·산촌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다는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작은학교를 타 시도와 유사하게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로 정의하여 지원대상을 축소하기 보다는 충청북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1차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 에 따른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정의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3조는 작은학교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 및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작은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작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작은학교 추이 분석 및 지원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작은학교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작은학교는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배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이 일정 수 이상 필요한 수업진행이 어려워 일반 학교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 적용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작은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작은학교 교육여건에 맞는 시설투자 등을 통해 작은학교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짐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작은학교 교직원 배치와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작은학교가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는 교직원의 업무부담과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도 감소함에 따라 작은학교에
배정된 교사들은 교과 외 업무까지 담당해야 하고 행정실의 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 또한 큰 상황임

- 또한, 시군의 중심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학교 교직원들은
통근 및 주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은학교에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하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교직원 배치 및 우대 조치는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대상학교
및 지원사업 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한 바,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은 필요한 조치라 보여지며, 시군별 상
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작은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작은학교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을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13조는 작은학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작은학교 증가는 학교생 수 감소, 학교규모의 축소를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학생 유입,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부칙 제2조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조례는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어 전부개정이 아닌 제정 형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 기존 조례의 폐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입법 절차상 타당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도내 작은학교(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고)는 2021년 185개교(전체학교 수 대비 38.4%)에서 2025년 194개교(전체학교 수 대비 40.0%)로 9개교가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203개교(전체학교 수 대비 41.3%)로 전망됨에 따라 작은학교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례는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법제처의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담당부서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음
-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원도심 등 도내 전역의 작은학교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고, 나아가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